

제목 : 정의론 18절 서면 강의

서면 강의자 : 이한

교재: 정의론(수정판), 황경식, 이학사

1 지금까지 내가 고찰해온 것은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될 원칙들이었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논의에서 빠진 다른 종류의 원칙들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옳음에 대한 완전한 이론은 ① 개인에 대한 원칙들 ② 국제법에 대한 원칙들 ③ 원칙들이 상호 충돌할 경우 그 경중을 가려 줄 우선성 규칙을 해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3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순전히 개략적인 약도(shematic)이다. 계통수의 아랫부분에 있는 원칙이라고 해서 윗부분에 있는 원칙으로부터 연역되는 것은 아니다. 이 도표는 단지 옳음에 관한 어떤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우선 구비되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라는 것이다. 먼저 큰 원칙을 세우고, 세부원칙을 세우고, 원칙들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그러지 않고 먼저 직관적 판단부터 한 다음에 원칙 따위의 충돌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 이 약도에 표기된 로마 숫자는 원칙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순서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다.

①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원칙 선택 ② 개인에 대한 원칙 ③ 국제법에 대한 원칙 ④ 우선성 규칙(그러나 우선성 규칙은 잠정적으로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형식으로 정한다.)

특히 ① 다음에 ②가 온다는 순서가 중요하다. ②중에서도 책무는 사회 형태에 대한 원칙들을 전제한다. 사회 형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공적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무가 도출이 안된다. 또 자연적 의무도 결국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결국 기본 구조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야 뭘 지지할지 알게 된다. 결국 사람의 책무와 의무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전제하며” 따라서 개인의 의무 조항이 제시되기 이전에 정의로운 제도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이에크가 정의는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연적 불평등에 모든 결과를 내맡기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엉터리라 할 수 있다. 실제 정의는 사회에 먼저 적용되고, 개인의 정의로움은 그 사회 정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따라 파악될 수 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기준이 없다면 아무리 욕구만 선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선할 리가 있는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선의를 갖고 학생들을 눈물을 머금고 쥐뺨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명문대에 많이 보내봤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그만큼 명문대에 못간다. 왜냐하면 기본구조가 학력 학벌 구조의 불평등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의 모든 노력은 개인적인 운명의 장난을 뒤바꾸었을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의로운 제도의 내용이 규명되고 난 뒤에 개인의 정의로운 행동의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가지는 ‘공지성의 원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리주의는 사회 정의와 개인 정의 간에 순서를 가지지 않는다.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공리주의는 외연적 동치를 이루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매 행동 순간순간마다 전체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해야하는 의무 속에서 살아간다. 즉, 공리주의는 언제나 도덕적 영웅주의를 추구하며, 이러한 도덕적 영웅주의는 인간본성상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공지되기 어렵고, 은밀히 사람

들이 회의주의와 습관의 타락에 젖어 들게 된다. 반면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의무를 넘어서는 행위와 의무 범위 내의 행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공리주의에서는 나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더 우대해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내 자신의 자녀의 장난감을 사줄때마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지만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그러하지 아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책무와 자연적 의무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의 딸보다 우대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개인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들이나 아들 친구를 그냥 채용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연적 의무 역시 기본구조가 확정이 되어야 이럴 파악하는 것이 단순하다. 사람의 책무와 의무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전제하며 따라서 개인에 대한 요구조항이 제시되기에 앞서 정의로운 제도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성의 의무를 생각해 보자. 왕정 체제가 정의로운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왕조체제가 확립되면 마치 신하된 사람은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의무가 자연적 의무인양 분위기를 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의 의무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규명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제도 하에서만 생각하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지나칠 수 있다)

4 그러므로 '옳음'(역자는 '정당성'으로 번역했는데 right가 문맥에서 더 와닿는 것은 '옳음'이라고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에 대한 완전한 이론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은 사회정의의 기본적 원칙, 그 기본적 원칙 하의 구체적 원칙, 개인의 책무 원칙, 개인의 자연적 의무의 원칙으로 차례로 내려가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짜고짜 개인이 처한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의 딜레마 풀이해서부터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콜버그가 제시했던 하인츠의 불쌍한 상황을 보자. 하인츠는 병든 아내가 있는데 이에 특효약이 있다. 지금 특효약은 약사가 약국에 갖고 있는데 약사보고 달랬더니 안준다. 그래서 급해서 약국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구했다. 이 딜레마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약사들과 돈을 낼 수 있는 다른 주체들의 문제, 그들이 서로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원리에 따른 도덕이 약국에 몰래 들어가서 특효약을 구해서 아내를 살리는 것을 지시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보편화하면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약사는 직업이 단지 약사라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도둑질을 수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셈, 즉 약으로 사람 목숨을 구하는 부담이 약사에게만 덤태기 썩워지게 되는 셈이 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보자면 약사가 그 약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태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약사의 약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부잣집을 털어서 그 돈으로 약을 사는 것도 정당화될 수 밖에 없고, 한번에 다 안털고 조금씩 조금씩 털어서 돈을 모아서 약을 사는 것도 정당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불운한 처지에 빠져 비싼 특효약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부담은 전 사회가 공평하게 져야 한다. 그리고 공평하게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사회에서는 하인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무 역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체계를 못잡고 헤메게 된다. 아 복잡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겨~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직관적인 발상은 다음과 같다.(The intuitive idea is this:) 어떤 것이 '옳다'라는 개념(A)은 그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같은 종류의 사안(things of it's kind)에 적용된다고 인정될 원칙들에 부합된다는 개념(B)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일상적인 의미에서 '옳다'

라는 말이 실제로 (B)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리학이 일상의 도덕적 언어의 의미만을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명료한 지침을 주는 일이라면, 때로는 ‘옳음’에 관한 해명이 실제로는 일상언어에서 불명료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보다 다듬어진 어법을 쓰는 일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나 ‘공정으로서의 옳음’은 ‘정의’와 ‘옳음’에 대한 정의나 해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공정성의 원칙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개인의 책무를 도출하는 사고 방식은 전통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 “옳음right”이라는 개념을 전환시킬 준거를 제시한다. 이것은 단지 종래의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진짜 의미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기술적인 서술이 아니다. 종래의 옳음 개념이 가지고 있는 번잡함과 비일관성을 제거하면서 개인의 행위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보다 명쾌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옳음 개념의 해명(explication)이 의미하는 바이다.

(※번역어 수정: <정당성 → 옳음> ; 정당성이라는 용어는 통상 legitimacy 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때문이고, 여기서 톨즈는 개인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대중에게는 통상 다수지배의 의미로 쓰이고 이으나 이 개념을 새로운 민주주의관에 의거하여 다시 해명하여, 다수지배가 일정한 제한을 받는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 개인의 행위가 의무를 준수하였는가 위배하였는가에 관한 판단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에서는 “본분을 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에 의해 내려질 수 있다.

5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들 중 하나인 공정성의 원칙을 이야기해보자. 이 원칙을 사용하면 자연적 의무(natural duty)와 구별되는 책무(obligation)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성의 원칙은 개인에게 책무로서 무엇을 요구할까? 바로

“(1) 제도가 정의롭고 (2) 개인이 그 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체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때, 우리는 제도의 규칙들이 정하는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힘에 눌려 마지못해 어떤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동체에 가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그 협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그 협동체의 규칙을 따라라고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여기서 정당한 본분이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다. 불운한 장애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자에게 배경적 구조는 일할 것을 본분으로 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은 사실적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들키지 않는 범법자처럼 정의로운 구조에서 정해진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이득을 취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6 결국 공정성의 원칙이 명시하는 “정당한 본분”이 바로 책무이며 모든 책무는 이런 식으

로 생겨난다. 공정성의 원칙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와 관행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첫째 부분이고,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두번째 부분이다. 그런데 두번째 부분은 첫번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사회제도의 정의론에 대한 입장을 간지 못한 채 공허하게 허허벌판에서 진공상태에서 개인의 책무를 말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사회제도가 처벌을 무기로 해서 어떤 행동을 지시하더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제도는 개인에게 고유의 의미에서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거나 애국심을 들먹인다 하더라도 그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강제는 조폭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의무를 규명하는 배경적 조건이 합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개인에게 의무를 말할 수 없고 왜곡되고 굴절된 정념의 경향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합당한 애국심이란 공동체의 제도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애착과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에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느니,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세계적 예술가가 한국사람이라느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땀다느니 하는 것에 열광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징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일뿐 합당한 애국심으로 볼 수 없다. 합당하지 않은 애국심은 애착의 근거를 독립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단지 그 나라에 우연히 속했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애착을 형성한다. 독재국가에 태어났으면서도 이것이 “한국식의 유연한 민주주의”라고 칭송하고 이를 비판하는 자에게는 “서양 사대주의에 물든 비열한 인간”이라고 반박하며, 엘리트 중심의 국가체육체제가 많은 희생자를 양산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여건이 불리한 동양인이 유리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많이 딸려면 지금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반박하는 자는 기실 자신의 욕망에 착종된 왜곡된 애착을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애착이 마치 한 국가 내에서 보편성을 갖는 애국심으로서 통용되던 산업역군의 의무니 뭐니 하여 결국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된다.)

7 책무는 다른 도덕적인 요구 사항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다.

① 책무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나 약속, 출마, 취업 수락이다.

② 책무의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된다. 약속이라는 것이 책무를 산출하려면 약속을 지킨다는 약속제도나 약속 관행이 정의로운 배경적 구조 하에서 유의미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③ 책무는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사람들이 지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해주는 예로 입헌주의 체제에서 공직에 출마해서 그 직책을 담당하는 정치적 행위를 생각해보자. 이 행위로 인해 그 사람은 그 직책에 할당된 의무를 수행할 책무를 지게 된다. 그런 직책에 따르는 의무는 제도적 지위에 의해 할당된 업무와 책임이지, 개인이 가진 윤리관(ethical worldview)에 합치하는 의무가 아니다.(양립가능할 수는 있고, 윤리관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의 동료 시민에게 책무를 져야 하는데, 이는 정의의 원리에 따른 민주사회를 운영하는 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책무다.

따라서 이 책무는 사기업의 사장이 동료 시민에게 지는 책무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밖에 없다.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해서 봐주고 친구 아니면 안봐주고 이런 것을 해서 안된다. 반면에 사기업의 사장은 친구가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우선 채용할 수 있다.(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자의 책무의 수준이 이와는 또 다르다)

경기에 참가할 때도 그 경기가 공정하고 훌륭한 시합이 되도록 하는 책무를 갖게 되고, 결혼하는 사람도 서로에 대한 신실을 지켜나가야 할 책무를 갖게 된다.

8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책무들이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책무는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것이 정말로 책무인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에 그 일견 의무로 보이는 행위를 할당한 제도가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다. 단지 약속했다는 이유로 약속 내용 그대로 책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혼인퇴직제를 보자. 근로계약서에 “혼인을 하면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쓰고 입사를 했다가 혼인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 안나가겠다고 하자 “그것은 너의 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생긴 책무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혼인퇴직제라는 제도가 정의로운 배경적 구조 하에서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즉 오히려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혼인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면, 혼인퇴직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명될 것이다. 이는 종교계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퇴학이나 전학을 하지 않는다면 종교 의례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에도 공통으로 작용하는 원리이다. 강의석 사건 고등법원은 책무의 원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책무는 없다. 일반 시민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국세청장이 편파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 처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넌 투표장에 가지 않고 소풍 갔으니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게도 자연적 의무는 있다. 정의로운 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또는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부정의한 제도가 정의로운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소한 자신의 몫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정의로운 원칙인가, 그 원칙을 어떻게 제도로 실현할 것인가를 공부해야 할 자연적 의무가 있고, 그렇게 파악된 것을 자기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실천할 자연적 의무가 존재한다)